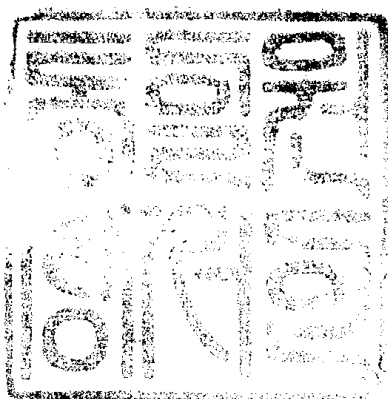


統一過程研究 93 - Ⅲ

# 獨逸統一 1,000日 報告書

- 구동독 지역 지원 현황 -

1993. 6



統一院

1. 이 자료는 연방수상실이 작성한 신설주(구동독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실적 보고서(통독 1,000일 보고서)를 주독대사관이 전문 번역한 것임.

2. 자료출처 :

연방수상실 , Leistungsbilanz der Bundesregierung fuer die neuen Bundeslaender

1993.4.30

# 목 차

---

1.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대응책 -----	1
2.	연대협약 -----	1
3.	신설주에 대한 재정이전 -----	3
4.	사회간접시설 구축 - 교통·통신 -----	5
5.	투자장애요인 제거 - 행정 간소화 -----	8
6.	투자 촉진 -----	11
7.	연구 및 기술개발 정책 -----	13
8.	신 택 청 -----	15
9.	구주공동체 -----	19
10.	동구권 시장 -----	19
11.	신설주 제품의 판로 -----	20
12.	신설주내 기업들에 대한 연방과 주의 공공발주 수주기회 부여 -----	20
13.	주택건설 -----	21
14.	농 업 -----	23
15.	노동시장 -----	30
16.	직업교육 -----	32
17.	연 금 -----	34
18.	전쟁희생자 복지대책의 확대 적용 -----	36
19.	장애자 복지 향상 -----	36

20.	사설복지단체, 상호부조, 전몰희생자 묘지	37
21.	의료사업	38
22.	환 경	41
23.	대 학	44
24.	청 소 년	46
25.	체 육	47
26.	가족정책	48
27.	여성정책	51
28.	노인복지정책	52
29.	국 방	53
30.	행정망 구축사업의 촉진	55
31.	문화보존사업	56
32.	40년간에 걸친 SED 불법 청산 - 민족적인 과제	57
※	부 록	60

## 1.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 대응책(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 대응책’의 일환으로 1991년과 1992년에 총 244억 DM이 신설주에 투입되었다. 그 중 50억 DM이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에 사용되었는데, 이로써 1991년 중 수많은 신규투자(Anschuinvestitionen)가 가능할 수 있었다.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 대응책’을 통해 특히 교통(약 65억 DM), 주택 및 도시건설(24억 DM), 고용창출 조치(ABM, 55억 DM), 경제지원(약 26억 DM, 그 중 3억 9,000만 DM은 조선소 지원), 환경보호(약 8억 1,200만 DM), 대학(약 7억 DM) 등의 제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졌다(부록 1 참조). 공동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추진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향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계속 추진될 것이다.

## 2. 연대협약(Solidarpakt)

연방과 주 간의 재정균형화(Bund-Laender-Finanzausgleich) 제도는 새로 재편될 것이다. 신설 5개주도 이 제도에 완전히 편입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1995년에 신설주와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해 558억 DM이 이전될 예정이다.

신설주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 주택기업체는 1월 1일부터 이자지불보조금(Zinshilfe)을 받고 1995년 중반부터 기업관련 구채무를 1 평방미터당 150 DM로 탕감받음으로써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된다.
- 연방과 신설주는 1994년과 1995년 중반까지 발생하는 이자 총액 약 70억 DM을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독일부흥은행(Kreditanstalt fuer Wiederaufbau)의 이자할인(Zinsverbilligungsprogramm)을 통해 주택현대화 및 정비를 위한 신용대부가 300억 DM에서 600억 DM으로 2배 증액된다(이 중 100억 DM은 특히 조립식 주택 개선을 위해 이자율을 3% 낮게 적용한다).

- 아직 소유권자로 등기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주택건설업자 역시 투자용 신용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이 과도기보증(Uebergangsbuergschaften)을 해 준다.
- 개인주택건설 투자촉진법(Foedergebietsgesetz fuer private Wohnungsbauinvestitionen)을 1996년까지 연장한다(5년간 50%의 특수감가상각).

연방은 채무할인(Kappung der Schulden)을 위해서만도 310억 DM을 부담하는데, 이는 구채무변제기금(Erblastenfonds)에서 충당되며, 연방은 이로써 장기간에 걸쳐 매년 최소 28억 DM의 부담을 안게 된다. 연대협약의 일환인 이 해결 방안을 통해 연방은 신설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는 또한 신설주에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 책정으로, 주민들의 현대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동기부여가 된다.

연방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1993년 중 20억 DM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출삭감과 세제상 특혜축소를 통해 90억 DM을 절감할 예정이다.

- 1995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7.5%에 상당하는 연대부과금(Solidaritaetszuschlag) 과 관련해서는 기초공제액(Grundfreibetrag)을 상향조정하여, 사회복지적 측면(soziale Komponente)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연방으로 하여금 1995년에 (연대부과금 세입 중에서) 총 280억 DM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개인 재산세는 70,000 DM의 공제액을 120,000 DM으로 인상조정하도록 하였다.

신설주의 재정수요(Finanzbedarf)에 비추어 1993년을 위해 연방과 구서독지역 주는 이자소득세법(Zinsabschlagsgesetz)에 의거 추가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각각 8억 5,500만 DM과 13억 DM).

추가적으로 연방과 구서독 지역주가 반씩 부담하여 15억 5,000만 DM을 마련하여 총 37억 DM을 1993년 독일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에 추가로 지원한다.

1994년도 독일통일기금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연방과 구서독 지역주가 추가로 절반씩 부담하여 총 107억 DM을 조달할 것이다.

### 3. 신설주에 대한 재정이전

#### a) 1991~93간 신설주를 위한 재정이전

1991년과 1992년 중 신설주를 위해 막대한 액수의 공공부문 재정이 지출되었다. 1991년도 총 이전액(Bruttotransfer)은 1,400억 DM으로 추산되며, 1992년도 총 이전액은 1,520억 DM에 달했다. 1993년도의 총 이전액은 연대협약의 내용을 고려할 때 1,830억 DM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액수의 절반 이상을 연방이 부담하였다. 현재 신설주에 대한 총 이전액은 구서독지역 국민총생산(Sozialprodukt)의 약 5%를 차지한다.

신설주로부터 연방이 거두어들인 조세수입을 감한 순이전액(Nettotransfer)은 1991년에 1,070억 DM, 1992년에 1,130억 DM, 1993년에 1,380억 DM이 된다.

지자단체투자총괄금(Kommunalinvestitionszuschale), '독일 통일 기금'에 대한 보조금, 사회보장보험, 자녀수당, 독일제국철도, 도로건설, 국방비에 관한 상세한 도표가 <부록 2>에 나타나 있다.

공공부문 재정이전 지출액

(단위: 십억 DM)

	1991	1992	1993
I. 총 이전액			
연방예산	75	89	105
'독일통일기금' 용 차입	31	24	15
EC	4	5	5
연금보험	-	5	15
연방고용청	25	24	32
구서독지역주/자치단체 예산	5	5	11
소 계	140	152	183
II. 유입액(Rueckfluesse)			
조세수입(연방)	31	37	43
행정초과수입(연방)	2	2	2
소 계	33	39	45
III. 순 이전액	107	113	138

연방부담액은 1993년에 약 1,050억 DM, 1994년이면 1,000억 DM이상에 달하게 될 것이다.

1995년부터 신설주는 연방과 주 간의 재정균형화 제도에 완전히 편입된다. 1995년도에는 재정균형화 원칙에 따라 신설주로 558억 DM이 이전된다.

1994년까지 신설주와 산하 자치단체는 연방 재정 건실화 방안(Foederales Konsolidierungsprogramm)의 일환으로 증액될 총 1,607억 DM의 독일통일 기금을 사용하는 셈이 된다.



b) 신설주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조치

o 소득세의 기초공제액	미혼 600 DM / 기혼 1,200 DM	
	<u>1991</u>	<u>1992</u>
계	8억 DM	9억 DM
그 중 연방	3.5억 DM	4억 DM
o 투자촉진법에 따른 특수감가상각		
계	15억 DM	17억 DM
그 중 연방	5.6억 DM	6.5억 DM
o 투자보조금법 (Investitionszulagengesetz)		
계	10억 DM	43억 DM
그 중 연방	5억 DM	20억 DM

c) 신설주는 부동산 사용시 연방정부의 할인방안(Verbilligungskonzept)에 따라 막대한 부담을 덜게 된다(연방 부담 총 26억 DM, 신설주 부담 10억 DM). 나아가 연방은 신설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부동산(WGT-Liegenschaften)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다(이에 따른 위험부담을 포함하여).

#### 4. 사회간접시설 구축 - 교통, 통신

교통인프라스트럭처의 점진적 건설을 위하여 1991년 12월 효력을 발생한 교통도로 계획수립 촉진법(Verkehrswegeplanungsbeschleunigungsgesetz)과 함께 계획수립기간이 매우 단축되었다. 중요한 교통계획인 소위 '독일 통일' (계획)을 위하여 투자대책법(Verkehrsmassnahmegesetze) 마련을 고려 중에 있다.

1992년 11월 4일 연방각의는 계획수립 간소화법(Planungsvereinfachungsgesetz) 초안을 의결하였다. 이 내용 중에는 이미 신설주에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교통도로 계획수립 촉진법이 독일 전체에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다.

1990년 하반기 중 연방예산으로부터 총 20억 DM이 특히 도로연결대책 (Lueckenschlussmassnahmen)을 비롯한 교통투자용으로, 그리고 36억 DM이 보수대책과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1991년 중 약 96억 DM의 연방예산(약 80억 DM의 교통예산, 약 16억 DM의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 대응책)이 신설주 교통투자를 위해 사용되었다.

1992년에는 1991년 대비 절반 이상 증액된 146억 DM에 달했다(97억 DM의 교통 예산, 49억 DM의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 대응책). 1993년에는 교통 예산으로부터 128억 DM이 신설주의 교통투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1992년과 1993년 투자용 지출의 절반은 신설주의 교통인프라스트럭처 개선용으로 지급되었다.

‘독일 통일’ 교통계획을 비롯하여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교통투자는 광범위하게 계속 추진될 것이다.

독일제국철도(Deutsches Reichsbahn DR)에 대한 투자만을 위해 1992년에 연방예산으로부터 약 70억 DM이 지출되었다. 1993년도 예산에는 76억 DM이 책정되었다. 1992년도 투자에는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 대응책’에 의한 자원 역시 포함되어 있다. 독일제국철도를 위해 1992년과 1993년에 각각 100억 DM의 예산(연방재원과 독일제국철도의 경제계획에 의한 자원)이 책정되었다.

독일제국철도는 신설주의 최대 투자자에 속한다. 독일제국 철도는 1991년과 1992년에 총액 약 180억 DM을 투자하였으며 이로써 독일제국철도를 중심으로 약 40,000개의 일자리가 확보되었다. 이 구동독 국영철도로부터 수주를 받던 680개 기업체 중 620개가 신설주에 있는 기업체이다.

신설주의 연방장거리도로건설(Bundesfernstrassenbau)을 위하여 1991년과 1992년 연방예산에 총액 61억 DM이 마련되었다. 1993년에는 연방예산에 약 38억이 배정되었다.

1992년 말까지 신설주의 연방장거리도로망은 약 1/3이 개축 또는 증축되었다.

신설주의 연방고속도로(Bundesautobahn) 안전도 증가를 위한 대책이 괄목할 정도로 진전되었으며 거의 완료상태에 이르렀다(중앙 분리대 및 비상전화 설치 등).

근거리 여객교통과 지방자치단체 도로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교통재원 조달법(Gemeindeverkehrsfinanzierungsgesetz)에 의거 1993년에 15억 2,000만 DM이 설정되었다.

## 텔 레 콤

텔레콤(Telekom)은 신설주에 세계 최신행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1997년까지 600억 DM(1991년 55억 DM, 1992년 110억 DM, 1993년 110억 DM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신설주에는 300만 개가 넘는 전화회선이 있다. 최근 2년 간에 설치된 전화회선은 동독에서 20년간 설치된 회선보다 많다. 1993년에는 850,000개 회선이 추가된다. 1995년 말까지 동·서독지역의 전화설치율이 동일한 수준에 도달한다.

텔레콤은 90,000개의 일자리를 확보 내지 조성하였으며 신설주에 50억 DM을 발주하였다.

우편공사(Postdienst)는 1990년대 중반까지 40억 DM을 신설주에 투자할 것이다.

체신분야에서는 1993년 중 다음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 텔레콤           약 110억 DM
- 우편공사        약 10억 DM
- 우편은행        약 1억 DM

## 5. 투자장애요인 제거 - 행정 간소화

제2차 재산법 개정법률(Das zweite Vermoegensaenderungsgesetz)을 통해 투자가 수월해지고 간소화 될 것이며 그 절차가 신속하게 될 것임은 물론, 과거에 반복적으로 악용되던 지연가능성이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 지방관청과 주정부 관청(Aemter und Landesamter zur Regelung offener Vermoegensfragen : AeRoV & LAeov)에 밀리는 신청서 누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무자 수를 1년 이내에 약 2배 증가시켰다 (4,090명).

이에 추가하여 연방은 미해결재산문제 처리 지방관청(AeRoV)에서 일하는 구서독지역 출신 근무자와 상담역 변호사의 인건비 중 90%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1992년 말까지 140명의 근무자와 205명의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었다. 1993년 중 변호사의 수가 300명으로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 연방은 추가적인 구동독지역 출신 인력(Ostpersonal)에 대하여서도 최고 500명까지 반년간 인건비의 90%를 부담키로 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1992년 말까지 327명이 채용될 수 있었다.

인력확보를 위하여 인력조정법(Personalstaerkegesetz)에 따라 조기에 전역된 연방군 인력(Bundeswehrpersonal)도 채용한다.

연방행정부의 중위직과 고위직 공직자를 최소한 6개월 동안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 지방관청에 파견함으로써 계속 지원되도록 한다.

이러한 대책을 통하여 미해결 재산권 신청 처리가 매우 신속화 될 수 있었다. 1992년 말까지 작센(Sachsen) 주와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주는 이미 부동산 신청서의 20%, 그리고 작센주는 기업반환 신청서의 43%를 처리하였다.

1993년 12월 31일까지 약 200,000 동의 주택이 국가관리상태의 법적인 해제 조치(Die gesetzliche Aufhebung der staatlichen Verwaltung)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제2차 재산법 개정 법률에 의거 우선조치가 개선될 것이다. 다수의 부동산 업체는 일간지를 통해 투자우선순위법(Investitionsvorrangsgesetz)에 대한 특별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미해결재산 처리 지방관청은 투자대상품목(Investitionsvorhaben)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재산분류법에 따른 재산의 분류(Vermögenszuordnung nach dem Vermögenszuordnungsgesetz :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과 재정재산) 처리율 역시 법적, 인적, 행정적 개선과 함께 1992년 말까지 제출된 신청서의 35%가 처리될 수 있었다.

토지등기소(Grundbuchaemter)는 투자성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부동산 등기가 원칙적으로 단 수주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 연방은 효율적인 토지등기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술장비와 같은 대규모 지원을 하고 서독지역주 출신 법률집행인(Rechtspfleger) 파견비용도 분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토지등기소에는 계속 증가 일로에 있는 등기 신청건수와 비교적 미숙한 근무자 때문에 성공적인 지역적 특수파견 조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지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바, 이는 주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할 과제이다.

바로 이러한 토지등기 업무가 면밀하게 준비되고 있는 등기절차촉진법(Registerverfahrensbeschleunigungsgesetz)을 통해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1993년 3월 31일 연방각의에서 의결된 보상법(Entschädigungsgesetz : 49년 이후 몰수재산 대상)과 배상법(Ausgleichsleistungsgesetz : 49년 이전 몰수재산 대상)으로 또 다른 개선조치와 신속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를 통해 반환(Rueckgabe)과 보상(Entschädigung) 간의 결정이 용이해질 것이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Eigentum)과 이용권(Nutzungsrecht)의 중첩으로 인한 복잡성(Auseinanderfallen)이 주요 투자장애 요소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상이한 이용권은 물권처리법(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과 채권 적응법(Schuldrechtsanpassungsgesetz)을 통해 규정화되도록 되었다. 이 두 법은 가급적 신속하게 각의에 제출될 것이다.

신설주의 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연방정부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연간 1억 3,060만 DM을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1992년 말까지 약 1,500 명의 판사, 검사, 기타 사법관계인이 신설주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1993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하게 되는 투자간소화법(Investitions-erleichterungsgesetz)과 택지조성법(Wohnlandgesetz)은 특히 건축법과 환경법 분야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일어나게 해 줄 것이다.

- 건축계획법(Bauplanungsrecht)과 허가법(Genehmigungsrecht)의 용이화 및 신속화
- (소음, 매연, 악취, 진동의 인접지역) 파급 방지법에 입각한 허가(imissionsschutzrechtliche Genehmigung)의 간소화 및 신속화
- 도시건축법(Staedtebaurecht)의 계약체결 구성요건의 강화
- 건축법(Baurecht)과 자연보호법(Naturschutzrecht)의 조화
- 폐기물 제독시설(Abfallentsorgungsanlagen) 허가의 신속화
- 신설주에 있어서의 행정소송절차(Verwaltungsstreitverfahren)상 법적구제의 기간내 처리

투자장애요인의 제거와 행정구축에 있어서의 진전상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연방경제성장관의 주도 하에 연방하원 의원, 연방정부 대표, 신설주 대표로 구성된 감독활동반(Minitoring-Arbeitsgruppe)이 설치되었다.

## 6. 투자 촉진

1991년도 투자보조금법(Investitionszulagengesetz)은 1994년으로부터 1996년까지 연장되었다. 앞으로 1996년 말까지 실시되는 신설주에 대한 투자는 그 투자개시(Investitionsbeginn)에 관계없이 투자보조금(Investitionszulage)을 보장받는다. 투자시기는 오로지 투자보조금의 액수에만 파급효과를 미친다. 1994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된 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의 액수는 8% 인 반면, 1994년 6월 30일 이후에 착수된 투자에 대한 투자보조금의 액수는 5%로 경감된다. 이러한 연장조치는 금융기관이나 보험업계(보험대리인과 보험중개인은 예외), 전기·가스 공급업체, 무역업체, 서부베를린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분야의 기업체와 수공업자 명단(Handwerksrolle)에 등기된 기업체는 만일 1992년 12월 31일 이후에 투자를 개시하여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했을 경우, 심지어 20%에 달하는 투자보조금(조세수입 결손 77억 DM)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업체는 1989년 11월 9일 현재, 당시 구동독지역에 주거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 운영되어야만 한다. 매 기업당 최고 100만 DM까지 보조금이 확대된다(건물에 대한 투자는 예외). 즉 예컨대 200만 DM을 투자할 경우, 100만 DM에 대하여서는 종전처럼 20%의 투자보조금을 받게 되며 나머지 100만 DM에 대하여서는 8%의 투자보조금을 받게 된다.

‘지역경제구조개선’(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이라는 공동과제를 위한 연방재원은 1992년 추경예산에 19억 DM으로 증액되었으며 1993년도에도 증가될 것이다. 이로써 신설주는 1993년 중 주정부와 EC의 재원을 포함하여 예산상 승인가능한 140억 DM을 사용할 수 있다. 재원의 투자에 관한 사안은 주정부가 결정한다.

장비(Ausruestungsgueter)의 구입 및 생산 초기연도에 대한 50% 특수감가상각(투자보조금에 추가적인 것으로써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정상적인 선형식 감가상각과 경감식 감가상각을 병행함)을 1996년까지 연장한다.

자기자본 지원계획(Eigenkapitalhilfeprogramm)에 대하여 현재 79억 DM의 규모에 달하는 약 98,000건이 승인을 받았다. 이 계획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독일부흥은행의 계획: 신설주에 대한 독일기업체나 외국기업체를 위한 부흥은행 중소기업 지원사업(KfW- Mittelstandsprogramm)의 1992년도 총 규모는 65억 DM 이었다. 이 계획은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부흥은행은 제출된 모든 재정조달 신청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흥은행과 독일조정은행(Deutsche Ausgleichsbank)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대부는 1992년 중 약 50억 DM에 달한다. 아직도 국영인 기업체에 대한 부흥은행의 대부는 1992년과 그 다음 해를 위해 최고 100억 DM까지 계획하고 있다.

유럽부흥계획의 일환으로 기업창설(Existenzgruendung)과 개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1990년 이래로 총 투자규모 680억 DM에 달하는 194,000여 건에 대한 대부승인이 이루어졌다. 이중 266억 DM이 투자되었다.

1993년도 유럽부흥계획은 신설주의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 100억 DM을 책정하고 있다. 이로써 전년도 수준이 다시금 달성될 것이다. 서독주는 ERP 계획으로부터 1993년도에 약 40억 DM을 지원받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900억 DM에 달하는 서독지역에 대한 ERP 지원은 기업신설, 지역촉진, 환경보호와 같은 계획에 집중되어야 했음에 반해, 신설주에서는 원칙적으로 일자리를 조성하거나 유지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유업 종사자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요양 업종은 예외). 이는 기업창설, 재사유화(Reprivatisierung), 구동독시절부터 사유기업으로 남아 있는 기업체에게도 적용된다.

영업자본세(Gewerbekapitalsteuer)와 재산세(Vermögenssteuer)의 징수 면제는 1995년까지 연장되도록 한다.



## 7. 연구 및 기술개발정책

중립적인 학술자문회(unabhaengiger Wissenschaftsrat)의 건의 및 연방과 주정부, 학술기관이 상호협의를 바에 따르면 2년 이내에 약 12,500 명의 학자와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임무와 전망이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연방연구기술성 산하 연구시설에 약 7,200명, 기타 다른 부처 산하 연구 시설에 약 2,200명, 주립연구시설에 1,170명, 그리고 과학자 흡수계획(Wissenschaftler-Intergrationsprogramm)에 1,920 명으로 되어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약 300 개의 연구분야 고용창출조치에 의한 일자리(forschungsnahе ABM-Stellen)가 있다.

연방기술성 장관은 연구 및 기술시설의 확장, 장비구비, 연구체계 통합 등 신설주의 연구와 기술개발을 위하여 1993년 중에 17억 5,000만 DM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책정해 놓았다.

연방연구기술성은 신설주의 산업연구와 개발(연구 유한회사 포함)의 촉진을 위하여 1992년 중 약 3억 5,700만 DM의 예산을 마련하였다. 이 중 신설주 특수계획(NBL-Sonderprogramme)과 연방연구기술성 전문계획(BMFT-Fachprogramme)을 위해 약 2억 6,500만 DM이 마련되었다. 1992년도 '구동독지역 경기부양 공동 대응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연방연구기술성에 배당된 9,240만 DM은 연구유한회사(Forschungs-GmbHs)의 연구개발사업과 개인 연구용역회사로의 분리설립(Ausgruendungen)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신설주 산업 연구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지원에 힘입어 연구유한회사(Forschungs-GmbHs) 설립은 연방(연방경제성과 연방연구기술성), 신탁청, 신설주의 공동노력을 통해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연구유한회사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권자(Traegerschaft)가 발굴되었다. 1993년 말 현재 약 20개의 연구유한회사(연구개발 인력 약 990명)만이 아직도 신탁청 소유하에 있었다.

1993년 중 연방연구기술성은 신설주 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약 3억 3,000만 DM을 마련해 놓았다. 이에 '구동독지역 경기부양 공동 대응책'의 일환으로 5,000만 DM이 추가되었다.

구체부 문제에 관한 새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연구유한 회사들이 다른 경쟁자들과 함께 구연방주에서 발주를 둘러싸고 경쟁을 해야 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한 연방연구기술성의 비용 지출 :

- 1991년도 집행액 : 4억 5,500만 DM(그 중 개별계획 항목 60에 의한 산업용 과도기 재정지출 4억 5,000만 DM)
- 1992년도 집행액 : 5억 8,000만 DM
- 1993년도 예산액 : 7억 3,130만 DM

나아가 연방연구기술성은 과학자 흡수계획과 특별투자계획(Investitions-sonderprogramm)을 위하여 2억 3,800만 DM을 마련해 놓았다.

연방연구기술성은 다가올 수년간 연구시설의 투자비 확보(Investitions-mittelausstattung)가 그 업무영역 내에서 계속 보장되도록 전력을 다해야 될 것이다.

연방연구기술성 전문분야 계획의 일환인 프로젝트 지원 :

1990년 집행액 8,200만 DM, 1991년 집행액 4억 8,800만 DM, 1992년 집행액 5억 8,700만 DM, 1993년 예산액 7억 5,000만 DM

신설주의 산업용 연구와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연방기술성의 특수대책 :

- a) 연방연구기술성의 전문분야계획의 일환인 연구개발사업은 10% 인상된 지원비를 받는다.

- b) 연방연구기술성은 신설주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수계획을 수립하였다.
- 용역연구(Auftragsforschung)와 용역개발(Auftragsentwicklung)의 지원(중소기업의 혁신력 강화)
  - 구서독지역으로부터 구동독지역에 의뢰하는 용역연구와 용역개발의 지원(신설주 내 연구개발시설의 유지)
  - 연구개발 인력 증가 촉진(FuE-Personal-Zuwachsforderung : 추가 연구개발 인력의 채용촉진)
  - 새로운 기술개발중점 기업설립촉진(혁신적 중소기업의 맹아로써)
- c) 혁신 기술지향 공공 상담소와 기술이전 인프라스트럭처 지원(기술센터, 창업센터, 기술혁신 상담소, 기술중개 에이전트, 현대기술이전을 위한 전시센터)

## 8. 신탁청

### a) 신탁청의 성공적 활동

신탁청은 1993년 2월 28일 꺾목할만한 그간의 기업사유화 결산보고서(Privatisierungsbilanz)를 제시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기업사유화 속도는 1992년중에도 높게 유지되었다. 당초의 약 12,800개 기업중 현재 약 2,300개의 기업만이 신탁청 소유로 남아 있다. 새로운 소유주에 의한 14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 확보 약속은 특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확약하는 것이다. 계약에 의해 확보된 투자 약속 규모 1,750억 DM은 곧 장차 수년간에 걸친 전체경제의 성장원동력(Wachstumsimpuls)과 기술혁신의 원동력(Erneuerungsimpulse)을 보증하는 것이다. 약 2,300개의 사유화 대상기업중 3/4 이상은 중소기업(근로자 1~100명)에 속한다. 이미 1993년 말이면 신탁청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기에 그 실질적 활동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회사 종업원에 대한 매각 형식으로 사유화된 약 2,000개의 “사유화 기업”(Management buy out)은 독자적인 구동독지역 중소기업의 구축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새로운 “신탁청의 중소기업을 위한 이니셔티브”(Treuhand-Initiative-Mittelstand)으로 이러한 발전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즉 신탁청 산하 소규모 기업체는 현저하게 단순화된 절차와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구동독지역 시민들에게 매각될 것이다(견본에 의한 간단한 매각계약 체결, 구매가격의 지불 유예, 기업 운영에 필요한 토지 등의 임대 가능성의 부여 등). 이에 추가적으로 특히 구동독지역 중소기업체와 기업창립자를 위하여 우대조건(구매가격 지불유예, 구동독지역 시민을 우대하는 낙찰자 결정, 미해결된 소유권 문제해결과 재정조달에 있어서의 임대가능성의 부여)으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신설주의 모든 일간지에 이러한 유리한 조건들이 공지되었다.

신탁청 소유기업의 정비(Sanierung)을 위하여 화폐통합 이후 1992년말까지 약 300억 DM이 지급되었다. 기존 구채무의 청산을 위한 차액 보상청구의 승인으로 650억 DM에 달하는 금액이 확정되었다. 기업용 신용대부를 담보하기 위한 신탁청의 보증액 규모는 250억 DM에 달한다. 앞으로 기업 정비재원은 현대적이고 경쟁력 있는 생산시설 확충을 위하여 생산적이고 시장중심적인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이다. 신탁청은 1990년부터 1993년 말까지 기업정비와 기업구조개편(Restrukturing)을 위하여 약 1,550억 DM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의 시점으로 볼때 신탁청 소유기업의 70%는 정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신탁청의 적극적 기업정비정책과 더불어 이러한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구조제편될 것이며, 기업사유화(산업분야별 자기자본의 확충, 투자와 채무지불능력 부족(Liquiditaetsengpass)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시장을 겨냥한 기업운영방안의 모색, 경영기술 지원 등)도 적극 지원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야말로 신탁청 활동을 앞으로 더욱 강화시켜 줄 것이다.

b) 핵심적인 산업분야(Industrielle Kerne)는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앞으로 신탁청과 해당 주정부와 기업주와 노조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탁청은 이러한 기업의 정비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경기전망을 바탕으로하지 않으며, 그대신 구조적 조정의 가능성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신탁청은 합의된 기업운영방안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한다. 이러한 기업운영방안이 재원조달문제 때문에 좌절되지 않도록 한다. 신탁청은 독일통일이후 기업의 정비를 위하여 약 1,200억 DM을 지출하였다(재정지원, 보증 등). 1993년도에는 약 500억 DM이 계획되어 있다.
- 신탁청은 기업들이 적정한 기업운영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 대한 추후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기업 운영자는 합의된 기업 목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자기책임하에 활동할 수 있는 자유스런 영역을 확보토록 지원된다.
- 기업체는 구조전환에 필요한 시간을 갖게 된다. 개별적으로 합의된 기간내에 한 기업체가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을지를 보여줄 수 있으려면 원칙적으로 1년 내지 3년은 걸린다(기업정비의 완료에는 더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 운영방안의 견실성 여부(Tragfaehigkeit)는 기업발전 과정에서의 주요 변화나 시장의 주요변화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 기업정비에 관한 합의는 이를 위해 필수적인 종업원의 태도에도 달려 있다. 일반적인 해고정지조치는 있을 수 없다.
- 기업정비의 목표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기업의 사유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기업정비 과정에서도 기업사유화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 신탁청은 산하기업의 판로지원을 - 연방정부의 판로촉진(헤르메스 보증, 박람회)과 연계하여 -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신탁청 산하기업간의 제화 교류 및 급부교류의 촉진, 라이선스 생산의 촉진, 시장개척과 판매과정상의 상호협조, 공공발주에 의한 지원).
- 신탁청은 작센주와 체결한 기업정비에 관한 합의사항이 다른 주에서도 적용될 것에 동의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는 산업계와 노조가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기업체를 지정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신탁청이 기업체의 정비능력을 확정하게 될 경우, 신탁청과 주는 각자가 맡아야 될 합의내용의 의무사항에 따라 기업의 정비와 사유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협력한다. 기업 장래에 관한 최종적 결정은 신탁청이 맡는다.
- 당분간 기업사유화에의 전망이 없는 중규모 내지 대규모 기업체는 기업 경영 합자회사(Managemnt-KGs)의 일환으로 유지될 수 있다. 현재 6개의 기업경영 합자회사가 적극적으로 기업정비를 준비중에 있다. 앞으로 기업경영 합자회사는 특히 기업경영에 있어서의 상승작용력(Synergie)을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산업분야별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는 합자회사의 영업정책이 기업전체와 관련되는 한 자문위원회(Beirat)의 활동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참여권(Mitwirkungsrecht)을 행사할 수 있다.
- 아직 사유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기업경영 합자회사의 형태로 될 수도 없고, 작센모델로 유지될 수도 없는 정비능력 부재의 대기업을 위하여 신탁청은 사안에 적합한 단일 정비방안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c) 신탁청과 신용청산기금(Kreditabwicklungsfonds)이 신설주의 구채무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에당초 통일조약의 원뜻은 이제부터 연방의 구채무청산기금(Erblastenfonds)에 의해 완전 인수될 것이다.

## 9. 구주공동체

연방정부는 구주공동체 내에서 협상에 성공하였다.

신설주와 동베를린은 1994년 1월 1일부터 EC 구조기금지원(Strukturfondsfoerderung : 제1지역) 지역의 대상이 된다(1992년 12월 11일/12일 Edinburgh 개최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의 결의사항).

구주공동체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신설주를 위하여 구조기금으로부터 매년 20억 DM을 제공하고, 약 25억 DM을 신용 차입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 재원은 산업 연관효과가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의 개선, 생산성 투자, 장기실업과 청소년 실업의 배제, 농업분야, 직업훈련교육, 연수교육, 직업 전환교육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신설주는 1999년까지 베를린 동부지역을 포함하여 구조조정용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1994년부터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지급되었던 연간 20억 DM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가 지급될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련된 구조기금조정(Strukturfondsverordnung)을 둘러싼 어려운 협상과정은 아직 종료되지 못하고 진행중이다.

유럽의회에서 아직도 완전한 표결권이 없이 참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설주(구동독지역) 출신 18명 의원은 앞으로 표결권을 갖게 될 것이다.

## 10. 동구권 시장

과거의 동유럽 시장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조만간 극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연방정부는 크나큰 재정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에 대한 수출시 제한적 규모나마 헤르메스 보증(Hermes-Garantien)을 계속하고 있다. 1992년중 사용할 수 있는 50억 DM 규모의 최고한도액(Plafond)은 이미 1992년 9월말에 소진되었다. 연방정부는 1992년 9월 23일자 각의 결의를 통해 크나큰 재정적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1993년에도 엄격히 개별적으로 사안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허용된 액수를 초과하는 수출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때 중요한 판단기준으로는 현재 헤르메스 보증으로 지원되고 있는 일자리가 앞으로 CIS 국가에 대한 헤르메스 보증 없이도 확보될지가 중요한 것이다.

헤르메스 보증의 제도적 장치 이외에 대 동유럽 수출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이 강력히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지원 조달 계획, 조인트 벤처, 물물교환을 위하여 연방정부와 신탁청은 상담, 행정지원 및 개별사안에 따라 물질적 지원까지도 마련해 놓고 있다.

## 11. 신설주 제품의 판로

연방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구동독지역 제품의 판로개선에 기여할 각종 대책(특히 특별 박람회, 전시회 촉진계획을 비롯하여 연수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1993년중 국내·외 박람회, 전시에 대한 구동독지역 기업체의 참가가 계속 장려되고 있다.

## 12. 신설주 기업에 대한 연방 및 주의 공공발주 수주기회 부여

연방 각 부처와 연방소유 공기업에 의한 공공발주시 구동독지역 기업에 할당되는 몫이 신설주의 기존기업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가능한한 초과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2년 이내에 2배로 증가되어야 한다.

연방경제성은 반년마다 발주규모의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감독제도 : Monitoring).

연방정부는 구서독지역 주가 신설주의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특혜규정 (Praeferenzregelungen)을 적용할 것을 호소한다.

연방정부 각 부처 제1차 중간보고에 따르면 전체 발주량중 신설주에 있는 기업체에 대한 발주량의 비율이 이미 오늘날 신설주가 국내총생산 (Bruttoinlandsprodukt)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높음이 판명되었다.



## 13. 주택 건설

연방정부의 촉진계획의 지원하에 지금까지 신설주의 주택중 25%가 정비되었으며, 폐건물 상태에 있던 43,000채의 주택이 새롭게 단장되었다.

막대한 보수와 현대화를 필요로 하는 신설주의 주택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의 부흥은행 융자 프로그램(Kfw-Programm)은 연대협약에 대한 합의 이후 300억 DM으로부터 600억 DM으로 2배 증가되었다. 100억 DM은 3%의 이율 인하조건으로 슬래브식 건물 개선에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재원에 대한 이율인하는 2% 선이 적용되고 있다.

대학생 기숙사 지원을 위하여 총 2억 5천만 DM의 연방재원이 4/4분기에 투입될 계획이다.

연대협약의 합의를 근거로 개인주택건설 투자를 위한 지원법(Foerderungsgesetz fuer private Wohnungsbauinvestition)은 1996년까지 연장된다(5년간 50%의 특별감가상각).

신설주의 사회복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연방의 재정지원액은 매년 10억 DM으로 계획되었다.

이에 추가하여 1993년 연방예산에 대한 논의시 사회복지주택 건설의 일환으로 자기주택 소유를 위한 대책(Wohneigentumsmassnahmen)을 위하여 2억 5천만 DM의 추가적인 융자를 허용하는 바, 이를 통해 건설업과 수공업 분야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도시건설 촉진을 위하여 중기적으로 연간 약 6억 2천만 DM을 사용할 수 있다.

주택산업의 사유화 과정은 1억 5천만 DM으로 지원된다.

주택건설분야의 구채무는 연대협약에 관한 합의사항으로 처리된다.

주택건설업자는 1994년 1월 1일부터 이자지원을 통하여 1995년 중반부터 1 평방미터당 150 DM 수준으로 기업 관련 구채무에 대한 채무 면제조치를 받음으로써 상당한 부담을 덜게 된다.

연방과 주는 1994년과 1995년 중반까지 발생될 이자총액 약 70억 DM을 각각 절반을 인수한다.

신설주에서의 주택신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택지조성 이니셔티브” (Wohnbauland-Initiative)에 착수하였다. 연방정부는 7,000여개의 자립적인 중·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 택지를 조성하고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4억 DM을 마련해 놓았다.

나아가 연방재산관리청(Bundesvermoegensverwaltung)과 신탁청은 약 47,000건의 부동산과 300,000건의 주택을 시장에 공급했다. 연방재산관리청이 내놓은 부동산은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이다.

택지조성법(제5호 참조)

소득상승과 연계한 임대료 인상은 시장경제적 여건상 불가피하며, 신설주의 주택시장의 발전에 불가피하다. 특수주택 보조금(Sonderwohngeld)을 통하여 임대료 인상에 따르는 저소득층이 부담을 사회복지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주택보조금 특별법(Wohngeldsondergesetz)은 1993년 1월 1일부 효력발생과 함께 신설주를 위해 더욱 개선되었다.

1993년과 1994년도 임대료 인상은 채무면제(Schuldentilgung)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은 투자, 수리, 정비에도 불구하고 전액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로써 주거의 질 개선이 가능하고, 임대자는 물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새로운 기회가 보장된다.

신설주에 있어서의 소유주의 자체수요에 의한 임대계약(Eigenbedarfskuendigung)은 1995년 말까지 예외적 사안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 14. 농 업

1990년 이래 구동독지역 농업의 구조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경제적 상황에서의 기업적응은 높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상당수의 농경기업은 현재 안정화 되었다. 현대식 식품산업 구축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적응과정(Anpassungsprozess)을 시증기관 효율적 각종대책과 막대한 재정재원을 통해 지원하였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농업분야 예산으로부터 약 120억 DM이 시장부담 경감용 긴급대책, 적응지원, 농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가장 큰 성공은 1990년 7월 1일을 기한 신설주 농업의 유럽농업시장 통합(Integration)을 들 수 있다. 새로운 농업경제적 시장질서는 판로를 확보해 주었으며, 유럽공동체(농업시장) 내에서의 수요와 공급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질서정연한 전환이 일어났다.

1993년도 농업분야 예산중 지출은 143억 DM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이중 25억 DM은 신설주의 농업분야를 위한 것이다.

최근 2년간의 구조적 변화의 정도는 그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독일통일이후

- 14,000명의 개인영농인은 자기책임하에 농업을 주업 또는 부업으로 운영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 3,000개 이상의 기업체가 상이한 법인형태로서 재구성 되었으며(등록 협동조합, 인적회사 또는 자본회사 형태)
- 820,000명의 농업분야 노동인력은 200,000명 이하로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방정부는 이와 같이 어려운 적응과정을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측면지원 하였다. 연방정부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농업분야 예산에서 총 145억 DM을 시장부담 경감용 긴급대책, 적응지원, 농업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 농업을 위한 특수단일 기업적 투자촉진계획을 통해 1990년 말부터 농경기업의 재개와 농업생산협동조합(LPG)의 농경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원하였다.

전년과 비교한 1992년도 농업지원조건은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농경기업 재개자는 신청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는다.

- 최고 23,500 DM의 착수금 지원(연령제한 55세)
- 기업당 최고 400,000 DM까지 최고 이자 5%(불리지역 6%) 조건의 자본시장 용자
- 건물과 농경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공공용자
  - 매 기업당 최고 160,000 DM의 농경기업 재개 용자(개별사안에 따라 최고 400,000 DM까지 가능)
  - 매 기업당 최고 50,000 DM의 현대화 용자(개별사안에 따라 최고 130,000 DM까지 가능)
- 매 기업당 최고 50,000 DM의 녹지관련 동물사육에 대한 투자보조금

채무보증부재의 결과 개별 농경인들이 신용대부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감안, 연방과 주는 신설주에도 국가가 지원하는 투자용 대부를 위한“ 채무 보증 지원 수단”(Forderinstrument Buergschaft)을 적용할 것에 합의하였다.

농업생산협동조합(LPG)이 경쟁력이 있고 환경보호적인 기업체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과 주는 법인에 대하여서도 투자촉진을 개방하였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지원대상 투자규모는

- 매 전일노동자 1인에 대하여 최고 143,000 DM
- 매 기업당 최고 350만 DM이다.

투자규모의 최고 90%까지 자본시장 용자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최고 5%까지의 이율인하(열세지역 6%)로 지원된다. 이율인하의 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최장 20년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최장 10년이다.

나아가 동구권 출신 이주민의 경우 공익과 관련된 개발대책(진입로 건설, 폐수 처리 등)의 보조금으로써 비용의 최고 25%까지(최고 100,000 DM) 지원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투자가 지원된다.

- 환경부담의 제거 또는 완화
- 노동생산성의 증가 및 생산비 절감
- 수확손실 및 저장손실의 절감
- 동물보호의 개선 및 식품위생 개선

그 이외에 에너지 절약 대책, 직매대책, “여가와 휴양” 분야 같은 것이 지원된다.

재원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농업발전계획서(Betriebsentwicklungsplan)를 제출해야 된다. 공공자본 참여가 자기자본의 25% 이상인 기업체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설주의 농업생산물공동체(Landwirtschaftliche Erzeugergemeinschaften)는 이미 1992년 7월 1일부터 인정되고 있으며, 지원되고 있다. 농업생산물 공동체에 대한 투자촉진 최고액은 199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0%인 바, 이로써 구서독지역보다 5%가 높다.

동유럽 제국과 특히 구소련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식품수출을 통해 신설주의 농기업은 시장확보에 있어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1991년 말까지 190,000 톤의 돼지고기와 180,000톤의 쇠고기가 특수조건으로 수출되었다. 오늘날 신설주의 농업은 거의 모든 상품분야에서 구서독주와 동일한 생산비로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기업구조 전환은 훌륭하게 진전되었다. 1991년 말까지 완료된 농업생산 협동조합의 등록 생산협동조합 또는 유한회사로의 변환과 이들 기업체가 사용하던 토지의 원소유권자에 대한 반환과 함께 농경분야의 구조 전환 과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현재 시장경제적 조건에 알맞는 기업경영적 적응과정과 특히 가격이 유리한 생산에로의 적응과정이 뒤따르고 있다. 일련의 농경기업은 그동안 벌써 안정화 되었다. 이에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적응상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미해결 소유권 문제와 보상문제를 비롯하여 과거 인민공유 면적의 재사유화가 장애요소로 남아 있다.

신탁청은 190만 ha에 달하는 농경지를 갖고 있다. 이중 600,000 ha는 주, 지방자치단체, 원소유권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의 토지개혁의 일환으로 징발된 약 130만 ha는 사유화 되어야 한다.

사유화의 법적근거는 신탁법(Treuhandgesetz)과 신탁청이 제정한 기본지침(Richtlinie)이다.

### 3단계에 걸친 사유화

신설주의 농업의 구조적 변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유화는 3단계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

- 농경지의 매각에는 사전에 일정한 임대기간(Verpachtungsphase)이 꼭 필요하다. 그 이유는 독일 농업의 수확현황(1993년도 농업보고서 참조)과 농업경영적 근거에서 제시되고 있다. 즉 자기자본이 부족한 농경인은 우선 우수한 기술을 배운다음 적당한 농경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토지매입을 위한 지출은 최종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 나아가 임대지(Pachtland)는 “ 훌륭한 농부를 빨리 ” 만들어 준다. 이 말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불변하는 농기업의 황금율이다. 이 황금율은 특히 고도의 구조변경 과정에 있는 지역 농기업에 꼭 적용되는 법칙이다. EC는 강력한 구조변환에의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EC 내에서의 농업개혁 과정에서도 이 법칙은 적용된다.

#### 제1단계 - 장기적 임대계약(Langfristige Verpachtung)

농경지는 통상 12년 단위로 임대되는데, 이는 기업의 장기계획수립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토지매각·관리회사(Bodenverwertungs- und -verwaltungs Gesellschaft : BVVG)는 주정부기관의 동의하에 원칙적으로 기업경영방안과 신청인이나 기업운영자의 직능에 따라 임대계약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당지역 관례의 임대료(Pachtzins)가 부과되어야 한다.

임대료의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농경제개인(토지개혁 희생자, 기타 과거의 자영농경인과 그 상속인)과 농경신설인(1990년 10월 30일 현재 지역거주 신설인)은 농업생산협동조합 승계기업체보다 우선권이 있다. 구동독 대변혁 이전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던 농경 신설인의 우선권은 제3위이다. 기존 기업의 존속으로 경지이용에 장애가 따라서는 않된다. 새로운 임대자는 원칙적으로 자영을 할 의무가 있다. 정당한 개인사유에 의해 예외적으로 자영을 하지 않은 과도기가 허용될 수 있다. 토지매입계획과 촌락조성계획(Landerwerbs- und Siedlungsprogramm)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임대자는 구매 우선권이 있다.

#### 제2단계 - 토지매입계획 및 촌락구성계획

제2단계는 1995/96년경부터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토지개혁 희생자는 토지매입 계획에 의거 적법한 보상금으로 신탁청 산하 농지나 이에 들어설 건물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연물에 의한 보상은 가능한한 해당자의 과거 소유 부동산이나 농지구입이 가능토록 또한, 구입액도 보상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보상법 초안에 따르면 보상액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1935년도 공시가격의 1.3배) 토지매입시 매우 적은 면적만을 제구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촌락조성계획에 의거 제1단계를 통해 신탁청 산하 농지를 임대한 농경제개인과 농경신설인은 유리한 조건하에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전체면적에 대한 자기 자본금 비율이 50% 미만인 기업체만이 지원된다. 지원의 상한선이 계획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다. 토지개혁 희생자는 토지매입 계획에 의한 유리한 토지매입에 추가하여 촌락조성계획의 일환으로 농지를 유리하게 매입할 수 있다.

제3단계 - 시가에 의한 매각

토지매입 계획과 촌락구성 계획에 의한 매각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는 농경지는 시가로 매각될 수 있다.

신탁청 산하 농지의 임대현상(1993년 3월 31일 현재)

	계 약 건 수	면 적 총 계 - ha -
장기적 임대계획에 대한 전단계(1)로서의 경작 통보	8,300	1,265,000
단기적 임대계약 (1~2년간)	3,487	453,000
장기적 임대계약 (통상 12년간)	750	54,000

(1) 경작통보중 일부는 이미 임대계약으로 변경되었음.

장기적 임대계약 체결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어려움이 있다.

- 신탁청 소유 농지의 원소유권자에 의한 반환청구권(1949년 이후 국유화 된 것)
-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산권 이양시 귀속여부의 불확정
- 신탁청 산하농지의 위치가 지적서류나 등기서류의 부재로 인하여 경계가 불확실하거나 경계표식의 부재로 인하여 일목요연하지 않은 상태



- 주정부 기관이나 토지매각.관리회사가 기업경영방안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 그 이유는 장부기록 결과가 정연하지 않고 기업경영자의 능력이 불확실하기 때문임.

미해결 재산관리청(Vermögensämter)이 반환신청 처리로 막중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토지매각.관리회사(BVVG)는 장기적 임대계약의 경우, 반환청구권자에게 유리하도록 특별해약권(ausserordentliches Kuendigungsrecht)을 마련해 놓았다. 이와 같은 해약권은 미해결 재산 관리청으로부터 반환청구권이 합법적인 것으로 확정될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이로써 장기적 임대계약 체결시 중요한 장애요인이 배제될 수 있으며, 임대의 속도가 더욱 가속될 수 있다.

#### 구 채 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농업구조를 효율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신설주의 수많은 농경기업이 안고 있는 구채무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신탁청에게 농경기업으로 하여금 특정조건하에 구채무를 탕감해줄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부채탕감의 일환으로 신탁청은 총 14억 DM에 달하는 구채무를 인수하였다. 이 채무는 주로 기업체가 구동독 공산당 정권 치하에서 기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요되었던 채무가 대부분이다.

연방정부는 기타 구채무의 대부분에 대하여 DM 개시 대차대조표법(DM-Bilanzgesetz)을 근거로 하는 일련의 부담면제 가능성(Entlastungsmoglichkeiten)을 마련해 놓았다. 이에 따라 신설주의 농경기업체는 자금지원에 의해 일정액의 구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채무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은 일단 기업체가 손익분기점(Gewinnschwelle)을 넘어갔을때부터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자금지원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긍정적 발전에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취득한 이득의 20%까지만 허용된다.

연방은 “ 농업구조와 해안보호의 개선 ” (Verbesserung der Agrastruktur und des Kuestenschuetzes)라는 공동과제의 일환으로 1992년중 12억 DM(1993년 13억 4천만 DM)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 1992년도 농경기업 적응지원을 위해 6억 9천만 DM( 1993년 6억 2천만 DM, 1991년 8억 DM)이 확보되었다. 신설주의 농업분야에는 1991년에 42억 DM, 1992년에 26억 5천만 DM이 모두 계획되었다. 1993년도 예산액은 25억 5천만 DM이다.

## 15. 노동시장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고용촉진법(AFG) 수정안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고용촉진제도가 마련되어졌다. 이로써 신설 5개주의 환경정비사업, 사회사업 및 청소년보호 민간사업을 위한 일자리들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었다. 연방고용청은 실업수당(Arbeitslosengeld) 내지는 실업자 부조금(Arbeitslosenhilfe)에 상응하는 임금비용 일괄보조(Pauschalierter Zuschuss zu Lohnkosten) 방안을 마련하여 해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의 취업을 보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고용촉진방안은 실업에 따른 파급효과(Mitnahmeeffekt)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상적인 완전취업으로의 전환을 용이케 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조치는 실업자 지원이 아니라, 취업지원조치로 볼 수 있다. 여하튼 실업수당이 최초로 임금비용 보조수단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로써 고용창출대책의 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 대규모 정비사업을 끝까지 완결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노동시장정책은 이 밖에도 새로운 산업기지, 주택건설 및 조정 사업에의 기반을 다져놓고 있기도 하다.

연평균 190만명의 (완전취업) 인력들이 수정된 고용촉진법에 의해 취업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노동정책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신설5개주의 경제여건이 취업에 유리해질 때까지는 없어서는 안될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노동정책은 1993년에 들어서도 신설 5개주의 구조전환 작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 지난 2년간 고용창출 조치에 의해 취업율이 현저히 증가하여, 1993년 3월 현재 총 79만 7천여명이 이 조치에 의거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1993년 3월에 체결된 연대협약에 따라 20억 DM이 추가로 책정되어, 이중 17억 6천만 DM이 신설5개주에 지급될 예정이다.

- 1993년 3월 현재 직업 연수교육조치(Berufliche Weiterbildungs massnahmen) 대상자 수는 총 190만명에 달한다.
- 퇴직과도지원금(Altersuebergangsgeld) 규정이 실시된 이래, 그 수령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1993년 3월 현재 65만 5천여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23만 5천여명이 조기퇴직수당(Vorruhestandsgeld)을 지급받고 있다 : 그러나 그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사람이 법정 노후연금 혜택 연령에 이르고 있다는 관계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 단축조업수당 지급에 의해 24만 6천여 건의 취업이 보장될 수 있었다 (1993년 3월 현재). 1991년의 평균 단축조업 근로자 수는 161만 6천여명 이었다.

1992년 1월부터는 기존 고용정책 장치들을 보다 융통성 있게 적용·실시하여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다음의 특별규정이 신설 5개주에 적용되고 있다 : 1992년을 기준으로 종료되는 대학 및 이와 유사기관에서의 연수조치(Weiterbildungsmassnahmen)는 1995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 밖에도 해직 위기에 처해 있으나, 완전 해고처분은 아직 받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이 직업교육 대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자영사업을 시도코자 하는 이들이 지급받는 지원비는 고용창출조치 혜택 근로자나 또는 이른바 구조적 단축조업자(Struktuelle Kurzarbeite)가 독립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된다.

이같은 적극적 노동정책을 위해 1991년 총 300억 DM이 지급된데 이어 1992년 1993년에는 총 340억 DM 내지 360억 DM의 자금이 확보되어 있다.

## 16. 직업 교육

2원제 교육제도로의 전환을 실시중인 신설 5개주는 동부독일 경제구축과 관련 직업교육 부문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는 기업체들이 연수정원을 스스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1991년 초부터 동부독일 직업교육 육성대책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체에서의 5만여 직업 훈련생 교육을 위해 총 2억 5천만 DM의 연방자금이 지원되었다. 신설 5개주들도 독자적으로 육성 방안을 마련, 이같은 연방의 육성대책을 병행, 지원하고 있다. 그래도 부족한 자리는 연방고용청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초기업적 연수대책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육성대책에 힘입어 1991년도 신설 5개주 직업교육 상황은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1991년에 이룩된 성과가 1992년에도 반복될 수 있었다. 1992년 9월 30일자 직업교육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3,200여 자리가 연수생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 연수생 수는 1,200여명에 불과하다는 흑자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고용청에 신고된 업체내 직업훈련 정원은 전년에 비해 20%가 늘어나, 7만 5천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연방고용청이 운영하는 직업훈련조치의 정원은 2만여 자리로 줄어들었다(44% 감소).

연방고용청이 운영하는 직업훈련조치의 대거 삭감과 1993년도 학교졸업생들의 증가로 인해 1993년도 직업연수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경제단체들은 연대협약과 관련하여 1993년 1월 25일에 있었던 연방수상과의 회의에서 신설주에 직업교육자리를 늘려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 밖에도 업체별 연수정원 증가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가 이미 추진중이다.

신설5개주의 직업교육정책에 있어서 질적 향상의 문제 역시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직업교육 및 직업연수 교육인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1990에서 1993년까지 총 1억 1천 5백만 DM의 연방자금이 책정되었다.

1992년에는 연방고용청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직업연수 및 이에 따른 시험 준비 및 실시를 위한 교육기자재 설치 보조비로 3천만 DM에 달하는 추가자금이 투입되었다.

1990년 연방교육성은 학교직업교육과 업체직업연수를 위해 다음의 지원을 하였다 :

- 1억 3,800만 DM : 1990년 긴급조치(직업학교 현대화, 교육인력의 자질 향상, 연수정원 사전 확보 조치)
- 1억 5,000만 DM : 1991/1992년도 직업교육 육성대책
- 1억 5,000만 DM : 연방고용청 산하 직업 연수기관들의 구축 및 확충

이상의 용도를 위해 1993년에서 1996년까지 3억 DM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17. 연 금

연금개혁과 마찬가지로 과도연금법 역시 초정당적으로 의견을 규합한 사회복지 정책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구동독의 노후대책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나, 실제로는 불투명한 특혜 규정들로 가득차 있다. 게다가 보험자에 대한 자료 기록조차 제대로 보관·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과도연금법(Rentenueberleitungsgesetz)에 의해 1992.1.1일부터 독일 전역에 동일한 연금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해, 연금수혜 연령, 유가족 후생복지(Witwenversorgung) 및 연금평가 기준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로써 신설5개주 연금 수령자들의 상황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 1990.7.1일부터 1992.7.1일까지 신설5개주 중산층 평균소득에 대한 월 기준 연금(Eckrente)은 672 DM에서 1,120 DM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구서독 연금수준의 2/3에 해당되는 수치이다(1993.7.1일부터는 1,357 DM으로 인상 - 구서독 연금의 73%)
- 신설5개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연금수혜 연령 규정으로 인해 남자의 경우 보통 63세에 - 장기간에 걸쳐 불입금을 지불했을 경우 - 노후연금(Altersrente)을 지급받거나, 아니면 실업자 또는 중장애자의 경우에도 60세에도 이미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약 20만명의 실업자들이 이같은 노후연금 수령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 근로능력이 1/3 밖에 안될 경우들에 대해 단일하게 지급되는 불구자연금(Invalidenrente) 대신 능력 손실정도에 따라 지불액수를 달리하는 직업 불능 연금(Berufsunfaehigkeitsrente) (역주 : 종전의 직무는 더이상 수행할 수 없으나, 다른 직업활동은 가능한 경우)과 취업불능연금(Erwerbsunfaehigkeitsrente) (역주 : 더이상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경우)으로 구분·지급된다.

- 구동독 연금 규정은 미망인에게 매우 불리하였다. 규정된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액의 유가족 연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과도연금법의 실시와 더불어 미망인의 소득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과거에는 이 유가족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15만명의 미망인들이 처음으로 유가족 연금(Witwenrente)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들중 70만명의 경우 연금액이 평균 290 DM 정도 인상되었다. 1992년 1월 1일부터는 배우자가 1992년 전에 사망한 경우, 유가족 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 1992.1.1일에서 1992.12.31일 사이에 연금수혜 대상이되는 자들을 위해 신뢰보호규정(Vertrauensschutzregelung)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만약 199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연금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새 연금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할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구 연금규정을 계속 적용시키기로 하였다. 1993.1.1일부터는 연금이 6.1% 인상되게 된다. 이로써 신설 5개주의 이른바 기준연금(Eckrente : 평균 소득자가 45년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은 재차 인상되어, 지급액이 종전의 약 1,120 DM에서 1,188 DM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는 구서독지역 평균 기준연금의 66.1%에 해당된다. 이로써 신설5개주의 연금은 1990.7.1일 (화폐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 실시일)의 연금보다 2배 이상 인상되었다 (약 100% 인상). 1993.7.1일부터는 기준연금이 약 1,188 DM 에서 1,357 DM으로 늘어나게 된다(14.24% 인상). 이는 구서독지역 연금수준의 74%에 해당된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연금보험체제를 신설 5개주내에 구축하기 위해 연방은 1990년 하반기 약 21억 DM의 자금을 이전하였다. 1992년 서부독일이 연금보험을 위해 동부독일로 이전한 금액은 약 140억 DM에 달한다. 신설5개주의 연금보험 지급비는 1989년 167억 DM에서 1992년 435억 DM으로 증가하였다(인상율 260%). 1993년 연금지출은 537억 DM(인상율 322%)로 증가한다.

## 18. 전쟁 희생자 (Kriegsopfer) 복지 대책의 확대·적용

구동독 지역 전쟁피해자들도 이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었다. 구동독 전쟁피해연금 수령자 수는 1990년 봄까지만 해도 약 5천명에 불과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연방 부양법(Bundesversorgungsgesetz)이 신설 5개주에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연금 신청자 수가 급증하여, 그 수는 현재 약 36만을 헤아리고 있다.

1993년 2월까지 31만 3천여 건이 처리되었으며, 이 중 약 23만 여명이 수혜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신청건의 약 90% - 한시적 수혜 대상자를 포함하여 - 가 통보를 받은 셈이다.

이 밖에 신설 5개주에도 전쟁희생자복지 (Kriegsopferfuersorge) 규정이 새로 적용되게 되었다. 3만 4천여 건의 신청 중 75%가 그간에 처리되었다.

## 19. 장애인 복지 향상

노동촉진법 및 중장애자법(Schwerbehindertengesetz)에 의거 1990년 10월 3일부터 장애인들에게 취업권이 보장되는 한편, 1991년 1월 1일부터 법적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사고보험과 전쟁희생자 부양비와 최저생계비 지원 (Sozialhilfe) 대책 등에 대한 복권(Rehabilitationsrecht)이 신설주에 추가로 적용되었다.

신설 5개주가 전신장애자법을 도입함에 따라 전신장애자들을 위한 특별 장려 대책 및 보호규정, 그리고 이들이 안고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 규정 역시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융통성있는 행정상의 과도규정을 도입하여 신설 5개주 내 장애인들도 서독에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동독이 발급한 전신장애자 증명서 소지자(증명서 제 III급 및 IV급)들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근거리 대중 공공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독일 연방 철도/제국 철도측은 중장애자와 전신장애자에 대해 특별할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접수된 신청건들이 모두 처리되기 까지는 아직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신청서류들이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약 60만 건).

장애자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의료·물리 치료 및 일반 교육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서독 직업훈련소 및 직업양성소(Berufsbildungs- und Berufsfoerderungswerke)의 활동망이 신설 5개주로까지 확장되었다. 총 1천 8백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8개의 직업훈련소와 총 2천 5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7개의 직업양성소가 - 일부는 임시적으로나마 - 이미 가동중이다.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취업이 불가능한 약 12만여 명의 장애자들이 독일 전역에 걸쳐 400여곳 이상되는 장애자 작업소(Werkstaetten fuer Behinderte)에서 각자의 능력에 걸맞는 작업을 해내고 있다. 신설 5개주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작업소 일자리는 약 3만 정도에 달하는데, 이 중 1만 7천 자리가 이미 새로 마련되어 있다.

1991년 12월과 1992년 12월에 연방 내각에서 각각 의결한 두 가지 조치들은 공공기관에서의 중장애자 취업을 별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0. 사설복지단체(freie Wohlfahrtspflege), 상호부조, 전몰 희생자 묘지

연방 정부는 복지 단체의 다원적 구조 확충 사업을 위해 1991년~1992년 간에 걸쳐 총 4천 7백만 DM을 지원하였다. 이 기간 동안 거의 960개에 이르는 사회복지관이 설치됨으로써, 사회복지 단체들은 간병 대상자들과 신체장애자들을 위한 외래 봉사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노인복지 정책과 비교). 또한 전지역에 걸쳐 입산부 상담소가 설립되었다(가족정책과 비교). 이 밖에 양로원 시설 중 약 20%를 복지단체가 자영단체로 전환·인수함으로써,

현재 전체 시설의 약 30%가 복지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와 관련된 복지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총 1억 5천만 DM을 지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 사설 복지 기구의 확충 :

1991년 : 3,000 만 DM

1992년 : 1,700 만 DM

-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사설 복지 기구 기관 및 시설들의 육성을 위한 Revolvingfonds 지원금 :

총 1억 DM(연 2,500만 DM)

- 17개의 상호부조 연락사무소 및 기타 시범

조치를 통한 총괄적인 자립방안 구축 :

1991년 12월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총 1,000만 DM이 지출

- 전몰장병 및 희생자 묘지 파악, 조성 및 보수

1991년 : 270 만 DM

1992년 : 896 만 DM

1993년 : 1,906 만 DM

## 21. 의료사업

신설 5개주에서도 지역, 사업 및 직장별로 구분되는 복합 의료보험제도가 구축되었다. 보험 가입자들은 서부독일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단체, 의사, 치과의사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지역에 걸쳐 외래진료가 실시되고 있는데, 개업 의사들 중 약 90%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연방 경제성은 신설 2개주 내 의료 종사자들의 개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 부흥계획(ERP) - '신용대부' 및 자기자본 마련 보조(Eigenkapitalhilfe)의 일환으로 저리 융자를 제공하였다.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ERP 융자금은 20억 DM을 웃돌고 있다.

연방은 1990년 당시 동부 의료보험 공동운영자에게 출발재정지원(Anschubfinanzierung) 명목으로 약 30억 DM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동부 의료보험 단체의 결제능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 자금중에서 13억 DM은 연방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는데, 따라서 추가지원에 따른 연방의 실제 재정손실은 17억 DM 정도에 이른다.

연방 정부가 의료시설 개선을 위해 제공한 약 5억 2천만 DM 상당의 긴급 지원 대책에 힘입어 종합병원들의 의료시설들이 현저히 개선될 수 있었다. 물론 아직 많은 병원 건물들이 노후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는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 대응책'의 일환으로 일괄 투자금 53억 DM과, 지역개발을 위한 신용대부 방안의 일환으로써 150억 DM을 지원하였다.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 대응책' 명목 일괄 투자금에 이어 1992년에서 1994년까지는 '독일통일기금'에서 총 126억 DM에 달하는 투자자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연방은 1993년 의료구조법(Gesundheitsstrukturgesetz)의 일환으로 신설 5개주 병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성 추가 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또 다른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방은 투자 촉진을 위해 1995년에서 2004년까지 연간 7억 DM의 재정지원을 주를 상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연방보건성은 1991년부터 신설 5개주 내 종합병원 상담지원소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91년 160만 DM이 제공되었으며, 1992년과 93년에는 각각 최고 500만 DM까지의 자금이 책정되어 있다.

신설 5개주 내의 의약품 공급상황은 수준과 규모 면에서 서부독일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총 7만 종류의 의약품들이 동부독일에 제공되고 있다. 지금까지 민영화된 약국은 거의 90%에 달한다. 이러한 약국의 민영화는 다수의 신장개업과 함께 의약품 공급 상황과 공급망을 현저히 개선시켜 나아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연방정부는 의료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 방안으로서 공공 의료 사업, 정신 병리학, 자가요법(Selbsthilfe), 예방, 식료품, 식품 위생법, 수의 행정, 상수도, 중독 상담, 의약품 공급, 유전 공학(1990년에서 1992년 간 투입된 자금 : 약 440만 DM) 등을 주제로 세미나, 연수회, 전문가 회의 및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연방정부는 시급한 구조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 및 온천 분야에서의 상담방안과 인력양성 방안을 추진·육성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 1992년과 1993년 각각 약 250만 DM이 지출되었다.

의료사업 분야에서의 구조변화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추진하였는데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 구상 및 해결책들이 개발·적용되었다. 이같은 방안은 의료 사업의 범위를 확대시킬뿐만 아니라 구조변경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 정신병리학 시범협회 1991년~1993년까지 : 1,500 만 DM
- 압환자 치료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1991/1992 : 5,000 만 DM
- 만성질환환자 치료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1991/1992 : 1,500 만 DM
- '마약 복용 예방을 위한 이동 홍보사업' 시범사업 1991/1992 : 200 만 DM
- '중독자 종합 사무소' 시범 사업 1993년까지 : 500 만 DM

이 밖에도 연방정부는 구동독 지역에서의 발암 목록자료를 보존하여 이를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놓았다.

신설 5개주들에 대해서도 법적 의료보험 단체들에 대한 구조 개선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써 신설 5개주 내 의료보험단체들의 재정은 앞으로 몇 년간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의료보험 구조 개선 방안은 신설 5개주의 특수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설 5개주의 경우, 입원에 따른 추가 비용은 서부지역보다 낮게 책정하였다.

진료수가 책정문제와 관련하여 신설 5개주들의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현 구축 단계에서는 서부독일 동료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들의 소득은 급격히 증대될 것이며, 이로써 이들의 최대 진료비는 조만간에 서부독일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 22. 환 경

40년 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동독의 환경을 급격히 파괴시켰다. 이로 인한 환경상의 부담과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1992년 10월 22일 연방과 베를린을 포함한 신설 5개주들은 구동독이 남긴 환경 오염 처리에 따르는 재정충당방안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를 것 같으면 환경 기본법의 명시사항에 따라 신탁청이 그 비용의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주가 맡기로 되어 있었다. 갈탄 공장과 대규모 화학단지에 대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신탁청이 75%를 부담키로 하고, 주는 실제 비용의 25%를 떠 맡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연간 10억 DM 규모의 자금이 책정되었으며, 갈탄문제 처리와 관련해서는 1993년부터 15억 DM 규모의 자금을 별도 지출키로 예정되어 있다.

최근 몇년간 신설 5개주의 환경실태는 현저히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1989년에서 1992년까지의 Leipzig/Bitterfeld/Merseburg 지역의 대기오염도는 현저히 낮아졌다.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그 수치가 1/3 이상 줄어 든 사례도 있다. Saale 강이나 Mulde 강으로의 유해 공해물질 방출 역시 70%에서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

환경 보전 상태를 조사한 결과 현저한 성과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특히 구동독이 남긴 환경오염잔재에 대해 적용된다. 환경오염 지역으로 의심받고 있는 5만여 개소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었다. 구 소련군 서부부대가 남기고 간 1,026개 군사폐기물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조사는 1994년이나 가야 완결될 것이다.

구동독 원자력 발전소들에 대해 광범위한 안전도 검사를 한 결과 이들은 원자력법 안전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이들 발전소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다. 우라늄 채광에 따른 환경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1,500 km<sup>2</sup>에 대한 탐사를 실시하였다. 1991년 연방이 Wismut 구 소련 - 동독 주식회사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Wismut 시설에 대한 보수와 재정비의 기반이 마련되어질 수 있었다.

신설 5개주 환경실태 개선을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광범위한 지원이 있었다. 이미 1990년 환경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명목으로 5억 DM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특히 식수공급 및 하수처리 개선에 주로 사용되었다.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 대응책'의 일환인 환경보호 긴급대책을 위해 1991년과 1992년 8억 1,200 만 DM이 지출되었다. 이 밖에도 연방정부는 '환경오염 제거를 위한 투자' 방안으로 시범계획들을 육성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총 1,850 개의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위해 1992년 말까지 약 15억 DM에 이르는 육성자금을 지원하였다.

연방 정부는 한편으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육성·지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론 개별 지역에 대한 환경 보수 및 개발방안을 입안하기도 하였다. Leipzig/-Bitterfeld/Halle/Mersenburg 및 Mansfelder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미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전래부터 내려오는 산업기지로써, 환경부담이 없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산업입지로 개발·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 대부분의 산업지역에 있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보이는 곳은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화물 선착장, 급유산지).
- 대부분 영업부지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을 철거하고 그 땅에 아무런 시설도 설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특별한 보수 작업을 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 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은 오염도가 심한 일부 단지(석탄건류소, 타르 증류소)에만 한한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구동독이 남긴 환경오염 처리와 관련된 산업의 유지·개발은 서로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함이 분명해지고 있다. 연방 정부는 Mecklenburg-Vorpommern 주 연안지역과 Erzgebirge의 작센-뵈멘지역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정비 및 개발방안 실시에 착수하였다.

상수도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본법에 따를 것 같으면 보건위생상 이상없는 식수 공급 사업은 주의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1980년에 작성된 EC - 식수기준 의무사항을 1995년까지 충족시켜야 한다.

1990년 10월 통일이되고 나서부터 신설 5개주 식수 상황 개선과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관리를 위해 대폭적인 지원이 뒤따랐다:

- |   |               |
|---|---------------|
| - 1991/1992년도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 대응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공급 육성·지원      | 1억 2,000 만 DM |
| - '1992년도 농업구조 및 연안보호 개선'을 위한 공동 과제의 일환으로 식수공급 특별 조치 단행 | 7,700 만 DM    |
| - 식수처리 및 분석 관련 프로젝트 지원                                  | 3,600 만 DM    |
| - '1991/1992년도 긴급 식수 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급수시설 조사               | 1,100 만 DM    |

동해 정비 방안과 Elbe 강 정화 방안에 따라 동해와 Elbe 강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고용창출 대책(ABM) 역시 대대적인 신설 5개주 환경정화사업에 일조를 하였다. 신탁청 소속 기업들에서만도 1992년 초까지 약 7만 명의 관련 인력이 환경 보호사업에 종사했었다. 지역단체 기관들까지 합한다면 10만 명 이상의 인원이 환경정화 작업에 종사한 셈이다.

고용촉진법에 명시된 고용창출대책의 후속 조치 덕택으로 이미 성공리에 시작된 정화대책이 1992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연방환경성은 신설 5개주 환경프로젝트를 위해 총 18억 DM 상당의 지원을 하였다.

## 23. 대 학

신설 5개주 대학들에 대한 대규모 정비사업과 일부 신설 조치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들 선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통일 독일은 계속해서 고도의 학술 연구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방 정부는 신설 5개주 대학 육성을 위한 긴급 방안을 의결 하였다. 1991년 7월 11일에 결의된 '대학 및 연구를 위한 공동 개혁 방안'에 따라 17억 6천만 DM이(75% 연방 자금, 25% 신설 5개주 자금) 특히 대학 종사 인력 자질향상, 연구 잠재력 확보, 대학 시설 정비 그리고 대학 외 연구 기관을 위해 책정되었다.

이 개혁 방안 소요 자금이 92년 7월 들어 40%가 증대되어 24억 3천만 DM으로 늘어났다.

연립 정부 소속 원내 정당(Koalitionsfraktion)은 1993년도 추경 예산안과 연방 재정 건실화 방안의 허용 범위 내에서 신설 5개주 내 대학 기숙사 확충을 위한 5개년 계획 명목으로 총 2억 5천만 DM에 달하는 연방자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구동독 학술원 연구자들도 이 육성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약 1천 여명의 신입 교수, 전임 강사, 시간 강사들이 이 대학 육성 방안의 지원을 받았다. 대학 기숙사 보수를 위해 1991/1992년 1억 9천 5백만 DM이 지출되었다. 일부 기숙사 건물은 열악한 편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수용능력은 신설 5개주 대학생들의 70%를 감당해내고 있다.

연방이 제시한 대학 개혁 방안은 신설 5개주 대학들이 구조변화와 현대화를 추진해 나아가는 데에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 및 연구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신설 5개주 대학들이 국제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1990년부터의 대학 및 학술에 대한 연방 교육성의 육성 방안은 다음과 같다 :

- 1990 긴급조치(공동 프로젝트, 초빙강사, 교재 수집, 계산기, 학자금 용자와 관련된 행정 업무) : 5,400 만 DM
- 대학 건물 신축 : 4억 7,400 만 DM
- 대학 혁신 방안을 위한 연방 지원 : 5억 1,200 만 DM
- 독일 연구 협회(DFG) 육성 방안 : 1억 1,200 만 DM

연방 교육부 대학 혁신 방안에 따른 기타 조치

- 학자 통합 조치(WIP)의 연장 및 소요자금 조성: 92/93년에서 3년을 연장하여 1996년까지 2억 DM을 보충, 총 6억 DM을 지원함(이 중 75%인 4억 5천만 DM은 연방 교육성이 부담, 나머지 25%는 신설 5개주가 부담) : 1992년 연방 교육성 집행액(잠정 추정치) : 1억 3천만 DM, 1993년 예산액 : 1억 3천 7백만 DM.
- 신설 Blue - List 단체(Blaue Liste - Einrichtung (BLE))에 대한 신설 5개주의 재정 부담 해소 : 1992년 집행액(잠정 추정치) : 5천 2백만 DM, 1993년 예산액 : 5천 1백만 DM

- 교육시설 확충, 건물신설 및 대학 외 연구기관 건물 보수를 위한 특별 투자방안(159) :
  - 1993년~1996년까지 2억 6,660만 DM(이 중 75%에 해당하는 2억 DM은 연방 교육성이 부담, 나머지 25%는 신설 5개주가 부담)
  - 1993년 연방 교육부 예정액 : 5,090만 DM

## 24. 청소년

‘하계 교류’ (Sommer der Begegnung) 계획안에 따라 1991년 약 8만 5천 여명의 구 동·서독지역 청소년들이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지원 자금 : 2천만 DM).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어린이들에게는 휴양 조치가 마련되어 졌으며, 약 1만 여명에 달하는 체르노빌 거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독일 여름휴가를 위해 추가 자금 1천만 DM이 지급되었다.

- 1991년 상반기 동안 연방정부가 탁아시설(유치원, 유아원 등) 비용으로 지급한 자금은 10억 DM에 달한다.
- 4년 기한으로 마련된 ‘청소년 지도자들에 대한 자질향상 방안’은 신설 5개주 지자체 청소년청 임직원들의 힘겨운 직무수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연방청소년계획을 위해 마련된 2억 DM에 달하는 자금이 1992년과 1993년 신설 5개주를 위주로 활동 중인 청소년 복지 사업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 연방 청소년 계획 중의 하나인 ‘폭력 퇴치 사업방안’은 폭력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폭력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 1992년부터 연간 2천만 DM 규모의 프로젝트를 실시·지원하고 있다. 이는 1994년 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 '청소년 보호 기관 구축 방안' 이 신설 5개주 내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방안을 위해 1992년 예산에서 5,000만 DM이 지출되었으며, 1993년에는 2,500만 DM이 책정되었다. 이는 1994년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계속 지속될 것이다.
- 고용촉진법 제 10차 개정안에 따라 '구동독지역 고용촉진' 을 위한 제도가 새로 마련되어졌다. 이에 따라 연방 고용청이 사회 봉사 및 청소년 보호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넘겨 받아 이 부문에서 종사하는 민간 활동자들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 1993년 1월부터 독일 - 폴란드 청소년 단체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측에서는 400만 DM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였다.

## 25. 체 육

연방 내무부 체육부문 예산 중 상당액이 신설 5개주로 배당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지출세목을 전 항목에 걸쳐 추적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전체 체육부문 예산 중 1991년과 1992년 각 2억 4,570만 DM과 2억 6,250만 DM 규모로 신설 5개주에 대해 지출된 자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 위 : 백만 DM

	1991(집행)	1992(집행)	1993(예정)
· 7개 올림픽기지 구축	9.5	9.8	10.0
· 연방중앙훈련소/중앙훈련소시설	23.4	21.9	20.5
· 본직 또는 겸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500여명 코치들의 취업 보장	13.0	15.2	15.6
· 신설 5개주 출신 정상급 체육인들의 사회복지 보장책의 일환으로 독일체육진흥기금에서 재정 지원	12.5	16.4	5.0 (폐지)
· 편입지역 내 단체들의 구조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 전문 협회에 구조지원 실시	8.0	5.5	-
· 통일조약 제 39조 3항에 따른 장애인 체육 활동 육성	1.2	1.2	-
· 통일조약 제 39조 2항 3절에 명시된 기구들(FES, IAT, Kreischa 약물복용 검사소)의 계속 운영	13.3	19.7	14.5
· 신설 5개주 체육협회 지원을 위해 주체육협회와 독일체육협회(DSB) 지원	2.0	-	-
· 경기장 건축 지원(신설 5개주에 대한 지출세목 부록3 비교)	4.4	10.6	29.4
계	87.3	100.3	95.0

## 26. 가족 정책

1991년도 연방예산 지출 : 60억 700만 DM

1992년도 연방예산 지출 : 71억 5,800만 DM

세 부 내 역 :

가. 법적 지원 :

- o 자녀 양육비(Kindergeld) :
  - 1991 : 4,993,143,000 DM
  - 1992 : 47억 DM
  - 1993 : 44억 DM
- o 생계 부양비(Unterhaltungsvorshuss) :
  - 1992 : 3,000만 DM
  - 1993 : 8,600만 DM
- o 신생아 양육비(Erziehungsgeld) :
  - 1991 : 287,913,000 DM
  - 1992 : 7억 9,200만 DM
  - 1993 : 12억 DM
- o 친모후생복지비(Mutterschutzhilfe) :
  - 1991 : 669,999,464.50 DM
  - 1992 : 1억 6,670만 DM
  - 1993 : 3,000만 DM

나. 곤경에 처한 임신부 지원기금(Hilfsfonds)

- 1991 : 4,000만 DM
- 1992 : 8,000만 DM(추경예산을 넘는 4천만 DM 포함)
- 1993 : 임신부 지원기금이 해체되는 1993년 1월 1일부터는  
'어머니와 자녀 - 태아 보호' 연방 재단이 신설  
5개주에까지 확대 담당함. 1993년 연방의 지원 : 4천만 DM

다. 임산부 상담체제 구축 : 178개의 임산부 상담소에 대해 1991년  
총 6,893,641.84 DM이 지급됨(이 중 820,943.17 DM은 각 주가 부담).

임산부 상담소 지원을 위해 1992년 총 17,104,286 DM이 주에 지급  
되었으며, 구축사업은 성공리에 종결되었음. 현재는 각 주가 직접  
이를 지원·육성하고 있음.

라. 신설 5개주 내 가족문제 관련 단체의 구조 확충 지원

- 1991	:	791,360 DM
- 1992	:	1,520,600 DM
- 1993	:	1,700,000 DM

마. 동·서 교류 프로그램

- 1992	:	1,531,930 DM
- 1993	:	1,300,000 DM

바. 신설 5개주 내 가족 휴양소 건축 및 설립

- 1991	:	9,841,000 DM
- 1992	:	7,741,000 DM
- 1993	:	3,500,000 DM

사. 신설 5개주 내 양모 휴양 시설 지원

- 1991:	700,000 DM
- 1992:	3,800,000 DM
- 1993:	1,537,000 DM

아. 신설 5개주 내 프로젝트 보조

- 1991:	466,000 DM
- 1992:	900,000 DM

자. 출산과 관련하여 용자를 제공한 자에 대한 상환/

신혼 부부들에게 저리 용자를 제공한 자에 대한 시장금리 상환

- 1992: 8,000만 DM
- 1993: 4,500만 DM

## 27. 여성 정책

연방 여성 및 청소년부는 남·녀간 사회지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써 신설 5개주에 대해 1990년 10월 3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 약 1,600만 DM을 지급하였음. 이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연 750만 DM씩 증가, 총 2,350만 DM에 달하게 될 것임.

o 세부 지출 내역:

- 신설 5개주 내 홍보사업: 1,890,000 DM
  - 신설 5개주 일간지 게재 광고 캠페인
  - 홍보자료 제작
  - 전시자료 배포
  - 신설 5개주 내 여성 이니셔티브의 기록 등
- 신설 5개주 내 커뮤니케이션 센터 지원 355,000 DM
- 신설 5개주 내 여성단체, 여성그룹 및 여성 이니셔티브의 구축 및 장려 6,522,000 DM
- 신설 5개주 내 여성단체 구축을 위한 독일여성협의회 연락사무소 업무 지원 3,500,000 DM
- 직업복귀 시범 방안 -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여건을 고려, 준비과정 실시 725,000 DM
- 신설 5개주 내 새로운 생활상 및 근로조건을 홍보하고, 관련 문의사항을 전담하는 여성들을 위한 5개 상담소 설치 5,477,000 DM
- 5개 상담소 상담인력의 실무교육 164,000 DM

- 신설 5개주 내 여성휴게실 설치 및 확충	1,271,000 DM
- 신설 5개주 여성들의 공공 사회 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홍보 자료	730,000 DM
- 신설 5개주 내 모범적 여성 자율 활동 기구에 대한 시상	38,500 DM
- '억압당하지 않을 것이다 - 신설 5개주 여성' 비디오 영화 제작 및 배포	240,000 DM
- 1992년 튜링엔에서 있었던 기독교총회 재정지원	20,000 DM
- 신설 5개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유치(유아)원 부모들을 위한 직업교육	425,000 DM
- 새로운 인생설계에 대한 신설 5개주 여성들의 사기 진작 방안과 이의 구체적 실현 방안 조성	380,000 DM
-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법' 모델 프로젝트	300,000 DM
- '여성들의 고급 인력화 - 지도급 인사로의 여성 직업 교육' 모델 프로젝트	500,000 DM
- 동·서부 독일 여성들의 적응방안 특히, 신설 5개주 여성들의 직업 활동 복귀	500,000 DM

## 28. 노인복지정책

1992년 말까지 연방 정부는 3억 8,000만 DM규모의 신설 5개주 내 노인복지 사업 명목으로 2억 5,400만 DM을 지출하였다.

- 사설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약 960여 개의 사회기구 확충사업이 연방 가족 및 노인복지성의 긴급지원을 받았다. 본 사업의 명목으로 90/91년 3,200만 DM이 지출되었다.
- 고령자와 장애자를 위한 상설 후생 기구의 확충사업 명목으로 1990~92년에 걸쳐 총 1억 7,500만 DM의 긴급 지원금이 지출되었다.



- 1990년도에 고령자를 위한 전체 상설 후생기구의 확충 명목으로 1억 3천만 DM이 투입되었다. 연방 정부는 1991년도에 들어 1,500만 DM 상당의 보충 지원금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 사설복지기구가 운영하는 양로원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긴급지원조치의 일환으로 1,500만 DM이 투자되었다.
- 1993년도 추경예산안에 들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일괄투자금은 양로원 시설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 29. 국 방

1990년 10월 3일부터 1993년 2월 2일까지 내륙간 국경시설의 약 60%(695 km)가 철거되었다. 나머지 468 km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철거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120 km에 걸쳐서는 지뢰 탐색 및 제거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1995년 3월 경에 종결될 것이다.

연방 국방성 소속 2,285 건의 부지 중 25%에 해당하는 550건의 부지만이 앞으로 실제 사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68%에 달하는 1,544건의 부지가 사유화되었다.

신설 5개주 공공 행정망의 구축을 위하여,

- 150여 명의 국방부 산하 인력이 1년 기한으로 동독 국가보위부 관련 자료관리 담당청(Gauck - Behoerde)에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으며,
- 250명은 주 행정부의 업무 부서에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미해결 재산권 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으로 104명이 파견될 예정이다(소집 절차 진행 중).

약 2만 2천여명의 군속들을 위한 항구적인 일자리가 보장되었다.

연방 국방성은 이미 초기부터 관련 지역 건축업체에 공사를 발주시킴으로써 신설 5개주 건축업계의 재출발을 지원하였다. 이를 위해 1991년 5억 4,700만 DM, 1992년 10억 8,500만 DM이 지급되었으며, 1993년에는 현재 동결된 금액을 제외하고서도 9억 6,500만 DM이 별도 책정되어 있다.

1994년도 예산 및 1997년까지의 재정계획에 따르면 건축사업비로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다: 1994년 12억 9,500만 DM, 1995년 13억 3,500만 DM, 1996년 14억 1,000만 DM, 1997년 147만 DM.

구동독지역내 군 식량조달을 위해 1992년 하반기 2,900만 DM이, 1992년에는 4,000만 DM이 지급되었다. 1993년과 1994년에는 각각 4,150만 DM, 4,500만 DM이 책정되어 있다.

구동독지역 회사들은 이 밖에도 의류납품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1억 1,900만 DM 상당의 직접 하청이 있었으며, 40여 건의 간접 하청사업이 2,300만 DM 규모로 추진되었다.

구동독 지역의 공공 통신망은 취약한 편이었다. 국방성이 구동독 인민군 통신체제를 완전 인수하였기 때문에 구동독 공공 통신망이 서독 Telekom 통신망으로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 공공 업무용 통신은 국방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국방성 위생국은 1991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 환자들에 대한 외래 및 입원진료를 일부 담당하고 있다.

공중구급센터는 공군에 의해 계속 운영되고 있다. 이 밖에도 4개의 공군 SAR - 지휘부서가 각각 한 대의 헬리콥터를 운영하며, 일반 주민들을 위한 구급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구동독 인민군들의 별도 장비들에 대한 저장과 감독 그리고 감축대상 군장비들의 제거 및 파괴를 위해 1991 ~ 1992년까지 3억 4,200만 DM이 지급되었다. 1993년에는 3억 4,800만 DM, 1994년에는 5억 500만 DM이 책정되어 있다.

국방성은 명망높은 구조단체, 공공 보건 기구, 대학 및 기타 유자격 수취인들에 대해 구동독 인민군들의 장비를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이에는 군용차, 야전 식당, 발전기, 주거용 선박 1척, 위생 장비, 구급 장비, 작업 장비 (지금까지 약 2,100만 DM 상당의 장비를 3천여 개별 신청자에게 분배함) 등이 포함되어 있다.

### 30. 행정망 구축사업의 촉진

연방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로써 자율적인 행정망 구축 (체신, 재무행정, 연방국경 등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는 사회간접시설 사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신설 5개주 사무행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방은 신설 5개주들의 독자적인 사무행정 체계 구축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연방은 독자적인 행정체계구축과 신설 5개주 주행정사무지원을 위해 15,000여명 이상의 직원을 투입하였다.
- 행정에 대한 인력지원은 1992년 이후도 계속되고 있다.
- 이 밖에도 연방은 신설 5개주와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건비 보조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1993년에는 이를 위해 2억 3천만 DM에 달하는 자금이 책정되었다 (1992: 1억 6,800만 DM).
- 이 밖에도 연방은 재산관리청 및 토지등기소에 대한 인력충당을 위해 1993년 2억 DM의 자금을 책정해 놓았다.
- 연방은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신설 5개주 청소년들을 위한 연방 행정 기관 내에 1만여개의 직장과 직업 연수 기회를 마련하였다. 1993년도에도 동일한 만큼 직업연수 기회가 확보되어 있다.

기타 행정망 구축 지원 대상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연방수사국(BKA) 직원들이 새로운 경찰조직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치안 경찰과 기동 경찰들에 대해서는 기술장비를 지원하였다.
- 신설 5개 주 내에 항공구급망이 새로 설치되었다.
- 기술지원소(Technischer Hilfswerk)의 체제를 새로 정비하였다.
- 직원 파견, 사무실 제공 및 업무 내용의 일부 분담 등의 대책을 통하여 연방은 정권적 범죄 및 통독 관련 범죄행위 중앙수사부 (Zentrale Ermittlungsstelle fuer Regierungs- und Vereinigungskriminalitaet in Berlin: ZERV)를 지원한다.

## 31. 문화 보존 사업

연방 정부는 신설 5개주 내 문화보존 사업을 위해 1991년 약 13억 DM을 지출하였다. 이에는 문화적응을 위한 특별 지원 방안 자금 약 9억 5천만 DM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른 활동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사멸위기에 처한 유럽 수준급 문화 기구 및 문화 행사 육성' 특별 방안
- 문화분야 사회 간접시설 구축 방안 : 이를 통해 지방, 도시, 주 관할지역내의 문화사업 기반을 다지고, 구조 개혁을 실시, 문화 발전의 지역 편중을 해소토록 하고 있다.
- 문화재 보호 대책 및 유적 보전 방안

이 같은 특별 방안과는 별도로 연방 정부는 범국가 차원에서 신설 5개주의 특정 문화 기구들을 육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프로이센 문화재단에 귀속된 과거 베를린 국립 박물관, 바이마르 민족 연구 기념관, Buchenwald 유대인 수용소 기념관, Dessau 건축관, Sorben 종족 문화시설, 포츠담시 성 및 정원, Leipzig 독일 서점, 포츠담시 중앙 자료 보관소 등을 들 수 있다. 연방은 1992년 신설 5개주를 위해 총 12억 DM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 중

8억 3,000만 DM은 문화정책상의 과도 재정(Kulturelle Uebergangsfiananzierung) 명목으로 투입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이다. 1993년도 이 과도 재정 명목의 지출금액은 원래 예정보다 3억 5천 DM이 증가한 6억 5천만 DM에 이르고 있다.

인간생활의 중요한 부문인 문화에 대한 연방의 지원은 내적 통일 달성의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로 인해 신설 5개주 내 문화 활동망이 보존될 수 있었다. 동시에 주, 지방단체들이 문화정책상의 활동과제들을 앞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방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놓았다.

## 32. 40년 간에 걸친 SED 불법 청산 - 민족적인 과제

구동독 공산당(SED) 독재가 범한 불법행위와 인권 침해 사례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 폭력체제가 무고한 양민들에게 저지른 피해와 고통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보상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이들 희생자들이 겪어야 했던 피해와 고통을 최소한 재정상으로나마 보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 1991년 8월 14일에 이미 연방 정부는 제 1차 구동독 공산당 불법행위 청산 법안을 상정하였다. 본 법은 1992년 11월 4일부로 발효되었다. 동 법은, 첫 보상조치로써, 동독 불법행위에 특히 많은 고통을 당한 자들을 우선으로 하여, 이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한다.

동 법은 구동독 체제 하에서 형사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 불법적으로 정신병동 수용 처분을 받은 이들의 복권과 피해보상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소련 점령군의 조치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피해보상과 복지문제도 다루고 있다. 새로운 절차를 개선하여 희생자들이 조속히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동 법은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이 밖에도 동 법을 통해 불법 감금에 대한 피해보상 및 관련자에 대한 복지대책이 마련되었다.

- 국회 ‘독일 통일’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안에 입각하여 연방 정부는, SED 독제가 행정기구를 동원하여 사생활이나 직장생활에 가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서도 복권 및 보상을 가능케 하는 관계 법령을 준비하였다. 1993년 2월 10일 정부는 제2차 구동독 공산당 불법행위 청산법을 의결하였다. 연방 상원은 동년 3월 26일에 이 법안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쳤다.
  - 본 법안은 1952~1961 간 구동독 정권이 범한 반 법치주의적 정치 박해의 전형으로 볼 수 있을 강제이주 사례들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은 재산을 반환받거나 또는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신설 5개주에서 거주하는 파시즘 저항자와 피해자들도 1992년 5월 1일부터 기존 유공연금(Ehrenpension) 형태가 아닌 새로운 나치 희생자들을 위한 보상법령에 따라 유공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유공연금은 월 1,400 DM (균일)의 피해보상 연금형태로 전환되어 지급되었다. 구동독 정부가 보장하지 않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박탈한 유공연금 역시 신 규정에 의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 연금 수혜자가 인도주의 및 법치주의 원칙을 위배했거나, 사익을 위해서 내지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직위를 남용한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그 연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박탈할 수 있다.
  - 1991년 12월 29일 부로 Stasi 자료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규가 제정됨에 따라, SED 불법행위 중 국가보위부 활동으로 인해 특히, 신설 5개주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국가보위부 활동 사항의 역사적 정리 및 청산작업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 동 법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들의 무제한 열람 및 조회권 보장
  - 자료들을 완벽하게 수집·정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의무조항을 광범위하게 규정

-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형사법 상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자료를 사용토록 함.
- 형사소추기관과 정보기관의 자료 사용 제한
- 연구, 정치 교육 목적으로나 언론 매체들이 자료를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조처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자료공개 허용

Stasi 관련 자료는 연방기관이 인수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제출된 약 140만 건의 자료 열람 및 심사 신청은, Stasi 자료법 (Stasi - Unterlagen - Gesetz)에 의해 가능케 된 자료개방이 개인의 과거 신상정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신설 5개주 내 공공업무 구축사업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쇄도하는 신청사안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자료 담당 기관을 급격히 확충하였다. 이리하여 3,400 명의 종사자 정원 중, 동 기관은 이미 3천여 명을 확보해 놓고 있다. 연방 정부는, 올 연말까지 동 기관이 나머지 인력도 확보하여 업무를 완전 가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 대응책

- 연방 분담액 -

단위 : 백만 DM

	부 서	1991		1992
		현금지출	청산단위(VE)	현금지출
1. 지방자치단체 투자방안	연방 재무성	5,000	-	.
2. 고용 창출 조치 (ABM)	연방 노동성	2,500	3,000	3,000
그 중:				
- 임금비용 보조		1,600	1,950	1,950
- 시설비용 보조		900	1,050	1,050
3. 교 통	연방 교통성	1,600	4,700	4,890
그 중:				
- 국도		400	1,500	1,490
- 근거리 대중교통수단		400	400	400
- 지역도로 건설		800	1,200	1,400
- 독일 제국철도의 투자계획		-	1,600	1,600
4. 주택 및 도시건축 사업	연방 건설성	1,100	1,100	1,300**
그 중:				
- 현대화/보수		700	700	900**
- 지자체 소유 주택의 민영화		200	200	200
- 도시건축사업 장려		200	200	200
5. 사기업 투자 촉진	연방 재무성	388	-	650
그 중:				
- 투자보조금 연장		-	-	250
- 조세상의 특별 감가상각을 통한 투자보조금 축적		388	-	400
6. '지역 경제 육성' 특별 방안	연방 경제성	600	600	600



	부 서	1991		1992
		현금지출	청산단위(VE)	현금지출
7. 구동독 조선업 지원	연방 경제성	130	700	600
8. 긴급환경보호방안	연방 환경성	412	400	400
9. 대 학		200	200	499.3
그 중:				
- 개혁 방안	연방 교육성	-	-	73.0
	연방과학연구소	-	-	226.3
- 보 수	연방 교육성	204	200	200
10. 정부 소유 건물 보수	연방 국방성	120	20	20
	연방 재무성	120	20	90
	연방 내무성	20	5	5
	연방 교통성	10	5	35
11. 교회 건축 사업	연방 내무성	-	-	80
12. 선박업체 보조	연방 교통성	-	-	25
13. 중앙난방시설 정비	연방 경제성	-	-	150
14. 경제연구단체 프로젝트 장려	연방 경제성	-	-	100
	연방과학연구소	-	-	80
15. 농·임업 관련 시설	연방 농림성	-	-	4
16. 기타 조치				
그 중:	연방 재무성	-	-	11.7
Frankfurt/Oder 국경지역	연방 교통성	-	-	10
합 계		12,200*	10,750	12,200**

\* 1991년도 추경 예산 포함

\*\* 1992년도 추경 예산 포함

## 신설 5개주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 내역

1991(집행액) 1992\*)

(단위: 10억 DM)

1) 주 정부 및 지자체 재정을 위한 지출 사항 \*\*)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괄 투자금 (GAO)	5.3	-
· ‘경제’ 과제	2.3	3.3
· 중앙 난방 시설 보수	-	0.2
· ‘농업’ 과제	0.7	1.2
· 편입지역 농업 보조	1.6	0.7
· 농업 차액 조정	-	-
· 긴급 환경보호 대책	0.4	0.4
· 지방도로 건설/근거리 대중교통 수단	1.8	2.8
· 도시 건설	0.8	0.4
· 대학건축/대학 개혁	0.4	0.8
·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	0.7	1.4
· 문화 간접시설 육성	1.1	0.6
· 주거 보조비	0.4	1.4
· 학자금 융자	0.5	0.8
· 전쟁 희생자 복지 후생	0.1	0.3
· 주 및 지자체 종사자들을 위한 자녀양육비	0.4	0.7
· ‘독일 통일’ 기금 (연방 보조비)	4.0	9.9
· 기 타	1.0	0.9
소 계***)	21.5	25.8

2. 주민들에 대한 지출사항 \*\*)

· 전쟁희생자 부양	0.3	2.1
· 실업자 보조금 / 고용창출대책 등등	2.8	4.5
· 조기 퇴직금 / 퇴직 과도기 보조금	5.7	4.8
· 사회보장보험	9.5	10.0
· 신생아 양육비	0.6	0.8
· 자녀 양육비	5.3	4.0
· 유공 연금	0.2	0.2
· 청소년 정책	0.1	0.1
소 계***)	24.5	26.5

3. 연방의 기타 지출\*\*)

· 연방 수로	0.4	0.4
· 도로 건설	2.1	4.4
· 독일 제국 철도	7.7	9.6
· 환경보호 투자	0.1	0.2
· SDAG Wismut 회사에 대한 지원	1.1	1.2
· 연방재산관리/ 건축사업계획	1.0	0.9
· 조선업 지원	0.1	0.3
· 자기자본마련 지원방안	0.1	0.5
· 광유 가격 인하	0.2	0.3
· 연구 및 기술개발	0.5	1.5
· 국 방	4.2	3.1
· 방위병 (Zivildienstleistende)	0.4	0.2
· 주요 인건비	0.5	1.1
· 보 장	-	1.0
· 베를린시에 대한 연방 지원	1.3	2.0
· 동베를린 토지 구입	-	0.2
· 기 타	9.4	5.5
소 계	29.1	32.4
총 계	75.1	84.7

\*) 추경예산 포함

\*\*\*) 구동독 경기부양 공동 대응책 포함 11.8 11.6

\*\*\*\*) 일부 반올림에 의한 차이 있음

## 신설 5개주 경기장 건설 지원

단위: DM

연방 주	1991 (지급액)	1992 (지급액)	승인예산 중 미집행액 (1)
Brandenburg	442,806.32	1,740,281.86	11,545,157.14
Mecklenb.-Vorpommern	2,390,953.31	2,003,131.92	28,691,641.00
Sachsen	1,090,983.74	1,727,412.54	11,934,986.16
Sachsen-Anhalt	456,900.00	2,368,254.61	7,444,250.00
Thuringen	40,000.00	2,794,446.00	1,147,804.00
계	4,421,643.37	10,633,526.93	60,763,838.30

연방 주	1993 예산액
Brandenburg	7,440,000.00
Mecklenb.-Vorpommern	11,670,000.00
Sachsen	4,210,000.00
Sachsen-Anhalt	3,000,000.00
Thuringen	3,050,000.00
계	29,370,000.00

### 연도별 미집행 예산(2)

연방 주	1991	1992
Brandenburg	0.00	11,545,157.14
Mecklenb.-Vorpommern	76,100.00	28,615,541.00
Sachsen	0.00	11,934,986.16
Sachsen-Anhalt	3,286,750.00	4,157,500.00
Thuringen	0.00	1,147,804.00
전체	3,362,850.00	57,400,988.30

(2)는 (1)에 대한 '91, '92년도별 잔액임.



## 獨逸統一 1,000日 報告書

---

印刷：1993. 6. 15

發行：1993. 6. 16

發行處：統一院 統一政策室

第2政策官室

Tel： 720-2148

725-0762

---

〈비매품〉